

산림재난방지법안 (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과 재난으로부터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산림청장이 체계적인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 산림청장이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예측과 피해저감 등을 위하여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9조).
- 산림청장이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및 공동활용하도록 함(안 제11조).
- 산불조심기간 설정 및 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등 산불예방·대응·조사·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장제1절, 제4장제1절 및 제5장제1절).
-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산사태등 긴급점검 등 산사태등 예방·대응·조사·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장제2절, 제4장제2절 및 제5장제2절).

- 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 예찰·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설계·감리 등 산림병해충에 예찰·방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장제3절, 제4장제3절 및 제5장제3절)
-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조사,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장).

II. 검토의견

1.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감리자가 따라야 하는 기준 명확화(안 제45조제3항·제4항)

- 안 제45조제3항은 방제사업을 설계하거나 감리하는 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설계·감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76조제7항제2호는 이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감리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즉, 안 제45조와 제76조제7항제2호는 범죄구성요건과 처벌규정을 별도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설계·감리하는 것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음.

한편, 헌법재판소는 처벌규정에서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이라

고만 되어 있을 뿐 범죄구성요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 유형의 실질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¹⁾한 바 있음.

- 따라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제45조제3항 법문의 명확화가 필요하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제43조제1항의 산림병해충 방제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 등이 수립한 방제계획을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승인한 바에 기초하여 이루어 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43조제3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승인한 방제계획’에 맞게 설계·감리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산림청과 협의하여 마련함.

<안 제45조 제3항·제4항에 대한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45조(방제사업 설계·감리) ③ 방제사업을 설계하거나 감리하는 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설계·감리하여야 한다.	제45조(방제사업 설계·감리) ③ --- ----- 제43조제3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승인한 방제계획과----- -----.
④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방	④ ----- 제43조제3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승인한 방제계획과 -----

1) 새마을금고법 제66조제1항제2호 등 위헌소원(2001. 1. 18. 99헌바 112)

[결정요지] 2. 범죄 행위의 유형을 정하는 구성요건규정과 제재규정인 처벌규정을 별도의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규인 경우, 처벌규정에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당해 법률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통상의 예이고, 법규 수범자는 처벌규정에서 정한 당해 법조에 의해 자신의 어떠한 행위가 처벌받는지 예측할 수 있게 되지만, 이 규정의 경우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처벌규정에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규정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벌규정 자체에서도 범죄구성요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 유형의 실질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사업 시공자가 설계대로 방제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방제사업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 ----- -----.

- 그 밖에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안 제22조에서 반복되는 자구
에 대한 약칭을 규정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
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 성 완)